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19가합545879(본소), 2021가합593529(반소) 판결
[청구이의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구

원고B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담당변호사 방민주

변론 종결2022. 3. 30.

판결 선고2022. 5.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190,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2022.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의 1/4은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9년 증서 제56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73,20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불허한다. 1)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 주식회사(이하 'E')는 전자,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 회사')는 축전지,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무정전 전원장치, 이하 'UPS')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이하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는 건전지, 배터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의 입찰공고

F는 2017. 10. 16. F 춘천센터 신축공사 중 UPS 부분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를 하면서 '배터리 백업시간 Full Load 기준 10분 이상 2N 구성'을 조건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다. 이 사건 입찰 참가를 위한 축전지 결정 과정

- 1) E는 2017. 10. 18. 원고 B에게 이 사건 입찰공고사실을 알리면서, G와 H가 제작한 배터리 중 '10분 보상 기준'을 만족하는 배터리 견적자료를 2017. 10. 19.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 2) E는 2017. 10. 18. 피고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I로 이직한 J에게도 위 1)항과 같은 사양의 배터리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였다.
- 3) J는 2017. 10. 19. E에게 피고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1차 견적서')를 보냈는데, 위 견적서에

첨부된 축전지용량산출서에는 백업시간 10분 및 30분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산출한 권장 축전지 사양이 기재되어 있다.

4) E로부터 축전지 용량 등에 관한 보완을 마친 새로운 견적서 요청을 받은 피고는 2017. 10. 19. J를 통해 E에게 새로운 견적서(이하 '이 사건 2차 견적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품명: 장수명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연축전지, 설치장소: F 춘천센터, 기능 및 용도: UPS 전원 공급/Backup), UPN700 방전테이블(이하 '이 사건 방전테이블'), 축전지용량계산식 등을 보냈다. 이 사건 방전테이블에는 방전 성능을 표시한 방전 특성표가 포함되어 있고, 위 축전지용량계산식에는 'UPN 700 방전테이블, 방전 시간 : 10분', '10분간 Back-Up 가능한 Cell Type을 찾으면 (2604.1W)

1) E는 피고의 UPN700 축전지(이하 '이 사건 축전지')를 UPS에 사용할 축전지로 결정하여 2017. 10. 23.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7. 10. 31. F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받았다.

2) 한편 J가 이 사건 입찰과정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가 E와의 직접 계약보다는 대리점을 통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길 희망함에 따라 E와 피고는 원고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축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3) E는 F로부터 발열량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2018. 1. 25. 원고 회사에게 'UPS 1200kVA 1대당 10분 백업용 축전지 구성이 C 장수명 2V 700AH * 240cells * 2sets로 구성'되어 있음을 명시하여 이 사건 축전지 1세트 기준 발열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위 자료를 받았다.

4) E는 2018. 2. 23. F와 UPS 납품계약(이하 그 계약 목적물을 '이 사건 UPS'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납품대금은 2,4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인수희망일은 2019. 5. 31.로 정하였다2) .

5) 원고 회사는 2018. 3. 22. E와 이 사건 축전지를 계약금액 1,548,8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19. 5. 31. 이전까지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외부 계약'), 2018. 4.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축전지를 계약금액 1,140,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19. 5. 31. 이전으로 정하여 납품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내부 계약'). 이 사건 내부 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물품의 검사·검수)

② 피고는 납품과 동시에 그 사실을 원고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 회사는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별도로 정한 물품의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물품의 검사(검수)를 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에 합격한 물품은 그 즉시 인수하여야 한다.

제17조(물품의 하자 발생시의 조치)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하자를 보수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공급물품과 동일한 물건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또는 대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공급물품에 상응하는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마. E의 UPS 납품 완료 및 신뢰성시험 결과 등

- 1) 피고는 원고 회사를 거쳐 E에게, 2018. 11.경 이 사건 축전지 납품에 앞서 18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장품질검사계획서(백업시간이 10분 이상 되는지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음) 및 절차서'를 전달하였고, 2019. 1. 9.경 위 품질검사결과를 전달하였다.
- 2) 피고는 2019. 1.말부터 2019. 2.초까지 F 춘천센터로 이 사건 축전지를 납품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9. 5. 2.경 이 사건 축전지 설치를 완료하였다.
- 3) F 측은 2019. 5. 13. 이 사건 UPS에 대한 신뢰성시험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축전지만으로는 방전시간 9초 만에 축전지가 방전되고, 이후 이 사건 축전지 중 UPN700(2V 700AH) 2개조로 병렬 구성된 것을 3개조 병렬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방전시험을 한 결과 방전시간 15분이 지나서야 축전지가 방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 관련 민사소송

- 1) E는 원고 회사,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9가합544203호로 '이 사건 축전지는 정전 등 외부 전력단절의 경우 10분 이상 안정적인 출력(보상, 방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위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400호 판결을 거쳐 '원고 회사, 피고 등은 공동하여 E에게 353,910,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관련 민사소송').

1. 원고 회사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입찰공고의 내용, E가 이 사건 입찰공고 직후 원고 회사에게 보낸 견적 요청 자료와 2018. 1. 25. 원고 회사에게 보낸 발열량 요청 자료의 각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외부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축전지는 백업시간이 10분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축전지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E는 이 사건 UPS 납품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하기 위해 F로부터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하여 설치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축전지가 백업시간 10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로 인하여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에 대한 부분

① 이 사건 1차 견적서 및 2차 견적서의 내용, ② 피고는 이 사건 축전지가 백업시간 10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방전테이블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전지가 이 사건 방전테이블에 나온 결과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임직원에게 업무집행상의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UPS가 '백업시간 10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E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E는 이 사건 방전테이블에 기재된 수치의 정확도나 그 수치와 향후 설치될 UPS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외부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018.말경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백업시간이 10분 이상 되는지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축전지를 그대로 납품하게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축전지 납품통지를 받은 후 별도로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이 사건 외부 계약 제10조 제2항3)),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9. 5. 13. F 측에서 시행한 UPS 신뢰성시험에서야 이 사건 축전지의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원고 회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각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 피고는 공동하여 E에게 손해배상으로 508,799,280원(=전체 손해액 847,998,800원 × 0.6)에서 E가 공제를 자인하는4) 이 사건 외부 계약 잔대금 154,888,800원을 뺀 나머지 353,910,480원(=508,799,280원 -154,88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2021. 1. 25. E에게 353,910,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사.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작성 등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내부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축전지 납품대금 중 912,384,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2. 8.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9년 증서 제56호로 2019. 7. 20. 미지급 납품대금 228,096,000원(=1,140,480,000원-912,384,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B가 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2) 원고 회사는 2019. 6. 5. 피고에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축전지 성능미달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채무불이행 책임, 제조물 책임, 불법행위 책임 등 일체 책임 포함)과 위 1)항 기재 미지급 납품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12 내지 15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본소)

피고와 E가 이미 납품할 축전지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모두 결정한 이후에, 피고와 E의 부탁 내지 추천으로 이 사건 외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축전지를 그대로 공급받아 이를 설치하였을 따름이고, 이 사건 축전지의 하자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와 같이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도 없다. 그런데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내부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사건 내부 계약 제17조 등)을 부담하는 피고는, 이 사건 축전지의 하자가 확인된 이후 원고 회사와 E로부터 부족한 성능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납품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고, 그 바람에 E가 F에 대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 가격이 더 높은 리튬이온전지를 구입 및 설치하게

되는 등, 원고 회사와 피고가 E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발생 및 확대에 전적으로 기여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E로부터 받지 못한 이 사건 외부 계약상 잔대금 154,888,800원만큼 구상할 채권을 가지고, 위 채권과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납품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상계 후 차액 73,207,200원(=미지급 납품대금 채권액 228,096,000원-구상채권액 154,888,800원)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나. 피고(반소)

원고 회사는 E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정확한 축전지 사양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 사건 내부 계약 제10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검수의무도 해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가 E에게 부담하는 책임 중 피고의 과실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음에도 피고는 E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전부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피고의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그 중 일부 청구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2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3 내지 6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피고가 E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과실비율을 35%로, 피고의 과실비율을 65%로 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 측이 이 사건 외부 계약의 체결 과정을 주도하다가 대리점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내·외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내부 계약에 원고 회사의 물품 검수의무가 명시되어 있고(제10조 제2항),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내·외부 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형식적 수익금액이 4억 원이 넘으므로, 원고 회사가 단순히 계약을 대리하는 역할만 한다거나 이 사건 축전지의 하자과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입찰공고 직후 E로부터 G와 H가 제작한 배터리 중 '10분 보상 기준'을 만족하는 배터리 견적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고, 2018. 1. 25. E로부터 'UPS 1200kVA 1대당 10분 백업용 축전지 구성이 C 장수명 2V 700AH * 240cells * 2sets로 구성'되어

있음을 명시하여 이 사건 축전기 1세트 기준 발열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내부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10분 백업'에 관한 부분을 전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8. 11.경 피고로부터 백업시간이 10분 이상 되는지에 관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공장품질검사계획서를 받고도 이 사건 내부 계약에 따른 검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 항목에 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 회사의 물품 검수의무와 마찬가지로 E 역시 이 사건 외부 계약에 따라 물품 검수의무(제10조 제2항)를 부담하는데, E가 물품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 사건 축전지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 회사와 피고 등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다.

4.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과실비율에 따르면, E에 대한 손해배상액 508,799,280원 중 원고 회사의 부담부분은 178,079,748원($=508,799,280\text{원} \times 0.35$)이고, 피고의 부담부분은 330,719,532원($=508,799,280\text{원} \times 0.65$)이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E에게 이 사건 외부 계약 잔대금 채권의 상계를 통해 154,888,8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위 금액이 원고 회사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추가로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일부의 강제집행 배제를 구하는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5.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E에게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액 353,910,4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공동면책액 중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23,190,948원($=353,910,480\text{원} - 330,719,532\text{원}$)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3,190,94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면책일 다음 날인 2021. 1. 26.부터 원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수

판사한웅희

판사김은영

- 1)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는 위 공정증서 전부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다가, 2022. 3.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 2) 이후 계약상 목적물이 추가되면서 납품대금이 총 3,6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 3) 이 사건 내부 계약 제10조 제2항과 그 내용이 같다.
- 4) E는 이 법원 2019가합544203호 소장 부분 송달로 E가 입은 손해액과 E가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외부 계약 잔대금 채무액 154,888,8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